

대구광역시건축사회 구·군구역회 운영규정 제정

제정 2024.03.06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구·군별 회원 상호 간의 정보교류와 친목 도모, 우의 증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회원 상호 간의 존중과 회원의 자긍심을 고취 시키고, 회원 업무 및 사무소 운영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“대구광역시건축사회(이하 ‘건축사회’) 구·군구역회(이하 ‘구역회’)”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회원) 구역회의 회원은 대구광역시건축사회 정회원으로 건축사사무소가 해당 구·군에 소재한 자로 한다.

제3조(임원의 구성 등) ① 구역회의 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회장 : 1명
2. 부회장 : 1명
3. 총무 : 1명

② 회장은 구역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할 경우 운영위원을 둘 수 있으며, 운영위원을 선임할 경우 회장은 그 선임 결과를 건축사회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4조(임원의 임무) 구역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.

- ① 회 장 : 구역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각종 회의 시 의장이 된다.
- ② 부회장 : 회장을 보좌하고,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총 무 : 구역회의 사무 및 재정업무를 담당한다.

제5조(임원의 선출방법) 구역회의 임원 선출방법은 다음과 같다.

- ① 회장은 건축사회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건축사회 회장이 위촉한다.
- ② 부회장, 총무는 회장의 추천으로 건축사회 회장이 위촉한다.
- ③ 임원 중 결원이 생겼을 시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를 보선한다.

제6조(임원의 임기)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부 칙(2024.03.06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03월 07일부터 시행한다. 단, 현 구역회장의 임기는 신임회장이 위촉되기 전까지로 한다.